

隱匿·亡失·無主財產 申告者에게 補償키로

山林廳은 은의(隱匿)·망실(亡失)·無主財產 10,600ha를 지난해 찾아내어 國有財產으로 환수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계속 隱匿·亡失·無主財產을 찾아내어 환수키 위하여 申告者에게는 補償金을支給하는 등 자산관리에 效率을 기할 計劃이다.

山林廳에 따르면, 8. 15해방과 6.25동란 등 社會·經濟的 불안한 기회를 틈타 國有財產이 개인소유로 不法登記되어 있는 隱匿財產과 국가에서 아직도 국유재산인줄을 모르고 있는 亡失財產 그리고主人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는 無主財產等이며,

이러한 재산들은 과거日本人所有였던 재산이 아직 국가에 귀속되지 못하고 있거나 공부가 없어져 버린 國有財產을 원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자산인 것처럼 登記해 버린 예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山林廳에서는 지난해에도 政府記錄保存所等에 保存中인 日政時의 林政記錄을 근거로 亡失 또는 無主山林 約 10,600ha를 찾아내어 國有化 조치하였으며, 그 규모는 지난해에 약 280億원을 들여 추진한 民有林 매수량(9,411ha) 보다도 많은面積이다.

山林廳은 금년에도 이미 확보해놓은 日政時의 기록을 활용하여 잃어버린 國有林을 찾아낼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이며 특히 隱匿재산의 경우, 불법취득한 개인에게 스스로 등기를 抹消하도록 설득한 후 이에 不應할 때에는 소송의 방법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한편 등기되지 않은 國有財產을 둘러싸고 최근 詐欺事件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지만 보아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찾아 내야 할 國有財產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隱匿·亡失財產等을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고제도를 마련해 놓고 應分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 國有財產이 登記簿 其他 公簿上 國家以外의 者의 名義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거나
-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無主의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도 또는 시·군(民願室, 山林課, 財務課)에 관련자료를 별첨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국가가 이미 국유재산임을 알고 있는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한 者에게는 申告財產이 국가로 歸屬措置된 후에 筆地別 한도액 100萬원의 범위내에서 財產價額의 0.3%-1%에 상당하는 補償金을 支給하게 된다.
- 한편 不法으로 詐取한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재산으로 잘못알고 매수한 선의의 취득자가 그 후에 不法으로 詐取된 國有財產임을 알고 國家에 自進返還한 경우에는 그 財產價額의 8割을 공제하고 2割의 가액만을 받고 국가는 善意의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으로 賣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